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성매매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94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매매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9.

다. 회 부 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성매매 경험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이른바 ‘성매매 후기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 차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Ⅲ. 검토의견

1. 성매매 관련 정보가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 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성매매를 한 사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이 금지됨을 명시함.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 <u>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현행	개정안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u>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u>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 ----- <u>제6호의2,</u> <u>제6호의3 및 제6호의4의</u> ----- ----- ----- -----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유도 등 성매매 관련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2021년 9,100건, 2022년 16,795건, 2023년 30,92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랜덤채팅 앱과 해외 SNS에서 성매매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됨에 따른 것으로 보임¹⁾.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또한 최근에는 성매매 경험자가 관련 정보나 경험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매매 관련 정보 심의·시정요구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6.
심의	17,877	31,801	27,594
시정요구	16,795	30,927	27,266

- 이에 개정안은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의 일종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을 근절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라는 문언은 그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불법정보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하에서는 성매매 관련 정보를 ① 성매매를 알선·유도하거나 조장·방조하는 정보와 ② 그 외 성매매를 한 사실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 성매매 경험 등에 관한 정보로 나누어 검토함.

- 첫째, 성매매를 알선·유도하거나 조장·방조하는 정보의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그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
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성매매, 성매매알선과 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²⁾의 ‘그 밖에 범죄
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도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가 가능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이미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성매매 등에 대한 처벌수위 및 근거조문>

금지 행위	처벌수위	근거조문 ³⁾
성매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科料)	성매매처벌법 제4조 제1호 제21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4조 제2호 제19조 제1항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처벌법 제4조 제5호 제20조 제1항

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둘째, 성매매 경험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성매매 경험 등 정보 공유행위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른 금지·처벌 근거가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동조 제1항 각 호4)의

3)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불법정보는 모두 동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처벌되는 행위에 대한 것임.

- 따라서 성매매 경험 등에 관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 경험 등 정보 공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의 근거가 우선 마련되어야 함⁵⁾.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매매 관련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매매 처벌법에서 성매매 후기 등을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마련이 우선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고,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해당 정보가 포함되게 되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및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이미 불법정보에 해당하므로 해당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5) 참고로, 성매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성매매처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0호,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